

#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광호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53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  
발 의 자 : 이광호 의원 (1명)  
찬 성 자 : 이광성, 최기찬, 김경우, 이병도,  
김용연, 정진술, 이승미, 이은주,  
채유미, 이세열, 최정순, 이현찬,  
김동식 의원 (13명)

## 1. 제안이유

- 노동자복지시설 중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은 노동권익 활동 및 비조직 노동자·단체의 활동을 위해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인 바 목적에 맞는 사용료 기준을 정하고자 함
- 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은 자치구 개별 조례로 설치·운영됨에 따라 지역별 편중, 종사자 처우 및 지원서비스 등의 형평성 문제 등 한계가 있어, 시민 노동권익 보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·운영함으로써 보완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의 부과·징수 근거 및 사용료 기준 추가(안 제8조 및 별표2)
- 나.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명칭 및 기능 추가(안 제3조 별표1 : 서울특별시노동자복지시설 명칭·위치 및 기능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별표와”를 “별표1과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사용료의 부과·징수)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[별표]를 [별표1]로 하고, 다음과 같이 한다.

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(제3조 관련)

명 칭	기 능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
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
서울노동권익센터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
전태일 노동복합시설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
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

[별표2]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용료(제8조 관련)

시설명	m <sup>2</sup> 당 사용료(원)	사용기간	비 고
노동허브	5,000	1개월	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3조(설치·운영)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<u>별표와</u> 같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 신 설 〉</p> <p>[별표] 서울특별시노동자복지시설 명칭·위치 및 기능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 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 능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노동자 복지증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노동자 복지증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노동권익센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태일 노동복합시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 신 설 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 신 설 〉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px;">〈 신 설 〉</p>	명 칭	기 능	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서울노동권익센터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전태일 노동복합시설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〈 신 설 〉	〈 신 설 〉	<p>제3조(설치·운영) ----- ----- <u>별표1과</u> --.</p> <p>제8조(사용료의 부과·징수) 복지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<u>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[별표1] 서울특별시노동자복지시설 명칭 및 기능(제3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 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 능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노동자 복지증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노동자 복지증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노동권익센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태일 노동복합시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[별표2]전태일 노동복합시설 사용료 (제8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설명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㎡당 사용료(원)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용기 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노동허브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5,000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개월</u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명 칭	기 능	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서울노동권익센터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전태일 노동복합시설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	<u>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</u>	시설명	㎡당 사용료(원)	사용기 간	비 고	<u>노동허브</u>	<u>5,000</u>	<u>1개월</u>	<u>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</u>
명 칭	기 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노동권익센터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태일 노동복합시설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〈 신 설 〉	〈 신 설 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명 칭	기 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	노동자 복지증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노동권익센터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태일 노동복합시설	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	<u>노동자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설명	㎡당 사용료(원)	사용기 간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u>노동허브</u>	<u>5,000</u>	<u>1개월</u>	<u>보증금 별도 관리비 별도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

○ **사용료 감면액** =  $\sum_{i=1}^5 (\text{사용료감면})_i$

$i$  = 비용추계 연차(2020년~2024년)

- **연간 사용료 감면액** ≒ 75,876천원

≒ 51천원 × 123.98m<sup>2</sup> × 12개월

▸ m<sup>2</sup>당 1개월 사용료 감면액 = 51천원

= 56천원 - 5천원

※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기준 m<sup>2</sup>당 1개월 사용료 = 56천원

※ 노동허브 면적 123.98m<sup>2</sup>

〈사용료 감면 비용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0)	2차년도 (2021)	3차년도 (2022)	4차년도 (2023)	5차년도 (2024)	합 계
사용료 감면액(제8조)	75,876	75,876	75,876	75,876	75,876	379,380

주 : 1. 물가상승률 미반영  
2.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자료를 사용하여 추계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   여차민

예산분석관      이정수

☎ 02-2180-7942

e-mail : intezer@seoul.go.kr